

화재 사후조사



글 | 최진만
경기 과천시방서 방호담당

1. 머리말

세상사 모든 일은 항상 표면에 드러난 일보다는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가 더욱 흥미롭기 마련이다. 결혼생활의 이야기보다는 연애시절 숨겨진 이야기가 재미있고 널리 알려진 성공담보다는 알려지지 않은 실패담을 통해 간접체험을 즐기려는 마음 등은 누구나 갖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일 것이다. 화재의 경우에도 다락 속에

숨겨둔 꿀단지처럼 이면에 숨어있으나 관심을 갖고 살펴볼 만한 알려지지 않은 화재가 있다. 이른바 소방대가 출동하지 아니한 화재로 분류되는 '사후조사(Late Fire Call)'가 그것이다.

2. 사후조사의 법적 근거 및 특징

사후조사란 소방대가 출동하지 아니한 화재로 발화장소 및 발화지점의 현상이 보존되어 있어 조사 가능한 경우^{주)}를 말한다. 소방대가 출동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화재발생과 동시에 이미 화재가 진화되었거나 축소된 경우로, 피해가 경미한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화재당시 인명 등의 피해가 적어 당사자가 자체적으로 목인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사후 화재보험 보상청구권 관련 또는 이해당사자간에 화재원인을 놓고 책임소재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농후하여 화재가 종료된 후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 경우에 따라서는 발화장소가 훼손되거나 발화원이 이동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 상에서 엔진룸이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 119에 신고하지 않고 운전자가 자체 진화한 후 전후사정을 생각해 보지도 않고 차량을 폐차하였을 때, 화재 사후 피해자의 입장에서 소방서로부터 화재로 인한 피해여부를 입증받기가 매우 곤란해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차량이 발화장소로부터 이동되었고 불이 난 차량자체가 소멸되어 원인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대부분의 국민들은 화재피해로부터 구제될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모르거나 소홀히 여겨 막상 피해를 당한 경우에 낭패를 볼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피해가 경미하다고

주) 소방방재청 훈령(제106호), 화재조사보고규정 제52조

생각하여 현장보존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발화원을 제거 또는 훼손하게 되면 사후 발생하는 행정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사후조사는 피해자가 소방서를 방문하여 '사후조사 의뢰서' 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면 3일 이내에 화재조사관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처리함으로써 화재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고 사후 예측되는 각종 분쟁으로부터 사실증명이 가능해진다. 이때 사지기록 등 화재당시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더욱 좋다.

● 사후조사 특징

- 피해가 경미하다.
- 분쟁발생 소지가 크다.
- 발화장소가 훼손되거나 발화원이 이동되는 경우가 있다.
- 발생확률이 적다.

3. 사후조사 사례분석

가. 모텔 화재

- (1) 일시 : 2007. 3
- (2) 장소 : 경기도 ○○시 ○○동
- (3) 원인 : 담뱃불 취급 부주의 추정
- (4) 개요

새벽 5시경 ○모텔 ○호실에 만취한 30대 손님이 입실 후 30여 분이 경과한 상태에서 경비설비가 울려 모텔주인이 ○호실로 올라가 보니 투숙한 손님이 나오면서 전기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리하여 즉시 손님을 다른 방으로 안내하고, 종업원과 함께 소화기를 이용하여 자체진화를 하였다고 한다. 다음날 아침 모텔주인이 화재발생 원인규명을 위해 사후조사를 의뢰하였다.

(5) 조사 결과

화장대 위에 놓인 플라스틱 용기류에 담배꽂초

를 투기(投棄)하여 축열→휴지류 착화→플라스틱 용융·축화→화장대 바닥면과 상단 거울 등 목재류 일부가 탄화·소실되었다.

(6)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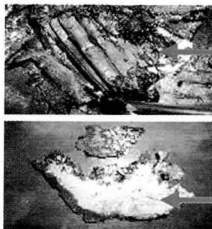
조사 결과 모텔 주인 및 투숙객을 입회시켜 화재원인을 설명해 주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행정안내를 실시하였다.



● 사진 1 ● 발화지점(화살표)



● 사진 2 ● 화장대 및 거울 탄화



● 사진 3 ● 담배 및 플라스틱 용기 잔해



● 사진 4 ● 발화지점

나. 정수기 화재

- (1) 일시 : 2007. 1
- (2) 장소 : 경기도 ○○시 ○○동
- (3) 원인 : 가스렌지 복사열 추정
- (4) 개요

관계자가 저녁밥을 하기 위해 가스렌지 위에 밥솥을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플라스틱 타는 냄새가 나서 확인해 보니 가스렌지 옆에 놓여있던 정수기에 불이 붙어 타는 것을 보고 수돗물을 이용하여 자체진압을 하였다고 한다. 불이 난 정수기는 관계자가 렌탈형식으로 매월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었는데 사후 동일제

● 기 고 ●

「화재 사후조사」의 특징과 보완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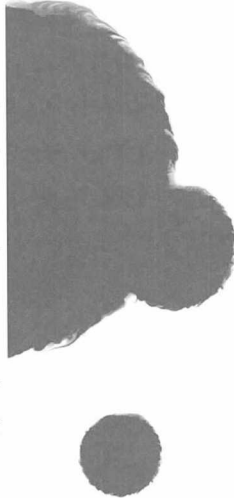
품으로 재임대 문제가 발생하자 화재발생 사실 증명을 위하여 의뢰하였다.

(5) 조사 결과

탄화된 물건이 정수기뿐이며 소실된 부위가 가스렌지와 인접한 쪽으로 편중된 것으로 나타나 가스렌지 열기(복사열)로 인해 정수기 외형 케이스에 열집적이 이루어져 연소촉진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6) 기타

정수기 렌탈업체에서 화재발생 사실증명을 요구하자 화재발생 20여 일 경과 후 피해자가 관할 소방서에 사후조사 의뢰한 것으로, 정수기 교환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화재발생 증명을 실시함과 동시에 화기 주변으로 가연물과 안전거리를 확보토록 지도하였다.



● 사진 5 ● 정수기가 있던 지점(화살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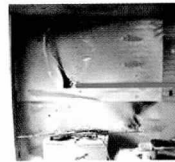
● 사진 6 ● 정수기 탄화형태

(5)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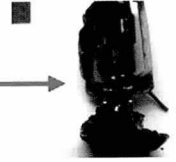
벽면 매입형 콘센트와 연결된 플러그에서 장시간 불꽃방전에 기인한 변색흔이 식별되었고, 콘센트 커버 및 플러그의 플라스틱만 용융·탄화된 점에 비추어 불 때 불완전 접촉에 의한 불꽃방전이 일정시간 반복되다가 콘센트 커버에 불티가 착화되어 연소촉진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6) 기타

관계자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상협의 문제로 보험회사에 문의하자 보험사로부터 화재발생 사실입증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사후조사를 의뢰한 사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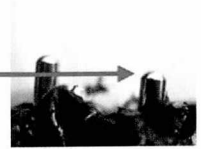
● 사진 7 ● 발화지점



● 사진 8 ● 콘센트 및 플러그 잔해



● 사진 9 ● 플러그 용융



● 사진 10 ● 플러그의 수열, 변색 모습

다. 작동기기(플러그) 화재

(1) 일시 : 2002. 10

(2) 장소 : 경기도 ○○시 ○○동

(3) 원인 : 플러그 불완전접촉 추정

(4) 개요

침구류를 판매하는 상점에서 24시간 외부 간판에 조명이 점등되게끔 하기 위해 스위치를 설치하지 않고 직접 플러그를 삽입한 채 사용해 오다가 플러그 및 콘센트 상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4. 사후조사 운영 · 제도상 보완대책

가. 사후조사 항목 신설

올해부터 소방방재청은 지금까지의 서술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으로 된 화재통계를 원인별(156종류), 장소별(588종류)로 세분화시켰으며 조사항목을 체크리스트식으로 개선하여 입체적인 데이터분석이 가능하게끔 '국가화재분류체계'를 정립하였다. 현행 화재유형의 분류

체계는 용도 또는 건축물의 개념으로 접근하여 구조물, 차량, 선박, 항공기, 입야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사후조사에 대한 항목구분이 없다면 일괄적으로 소방대가 출동하여 소화활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할 우려가 있으며 정확한 통계관리에 사각지대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사실 지금까지 사후조사에 대한 관심과 통계관리가 미비하여 사후조사의 발생건수는 물론 지역별, 장소별, 처종별, 시간대별로 계량화된 자료가 없는 실정이다. 영국에서는 1993년까지 사후신고 화재 및 열과 연기로 인한 단순화재를 통계에서 누락시켜오다가 1994년에 비로소 통계에 포함시켰는데 이로 인해 화재가 연간 5천 건 이상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다. 소방방재청에서는 앞으로 누구나 실시간으로 화재동향을 알 수 있도록 국가화재분석전산시스템(NFDS)의 도입을 진행 중인데, 여기에서도 사후조사 항목을 따로 구분지어 통계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나. 사후신고요령 홍보

과거 자신의 집에 실제로 화재가 발생하여 급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소방차가 출동한 차량 수에 따라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소방차 1대만 보내달라는 웃지 못할 일화가 있었다. 사후 신고된 화재의 경우에도 행정조치에 의한 불이익이 혹시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겁이 나거나 두려워서 화재 자체를 은폐하려는 경향을 가끔씩 볼 수 있는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오히려 사후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선의의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점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인식부족에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화재피해복구지원센터와 지역 언론을 통한 홍보활동 전개는 피해를 당한 국민들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5. 맺음말

화재통계의 정확성은 근본적으로 국민들로부터 나온다. 알려지지 않거나 행정절차의 무지(無知)로 초래되는 피해는 사회적으로 비효율적이며 화재 예방적 차원에 기여할 수 없는 것이다. 사후조사를 언제까지 임시방편으로 덮어둘 수 없다고 볼 때, 이제 수면위로 끌어내어 알릴 필요성이 있다.

사후 신고된 대부분의 화재가 보험금 지급과 관련이 있거나 책임공방에 얽혀 신고된 것이 다수인 점을 보면 실제로는 아무런 이권관계가 없기 때문에 묻혀지고 있는 화재는 더욱 많다고 볼 수 있다. 정확한 화재통계의 D/B화 실현과 대국민 홍보활동은 소방안전정책의 구현이라는 시스템 속에서 함께 용해되어야 한다고 본다. ☺